

사용대차 확인서

사용인 (수급자)	성명	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)	
	주소			
	임대인과의 관계	<input type="checkbox"/> 임대인이 수급자의 부양의무자에 해당 (관계:) <input type="checkbox"/> 임대인이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외 2촌 이내의 혈족 (관계:) <input type="checkbox"/> 임대인이 제3자 ※ 부양의무자란 임차인과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의미 (부모, 자녀, 사위, 며느리, 계부모)		
	임대인과의 함께 거주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임대인과 동일 주택등에 거주함 <input type="checkbox"/> 임대인과 동일 주택등에 거주하지 않음		
사용내용	사용현황	<input type="checkbox"/> 수급자가 방, 주방, 욕실 등 주택 전체를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수급자가 방, 주방, 욕실 중 일부만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		
	임대기간	20 . . . ~ 20 . . . 까지		
	임대인에게 주는 대가	<input type="checkbox"/> 생활비 일부 보조 <input type="checkbox"/> 육아·가사노동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다른 종류의 대가(대가:)		

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등을 위 사용인(수급자)에게 다음과 같이 사용대차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.

	년	월	일	
임대인				대리인
주소 :				주소 :
성명 :		(인)		성명 :
생년월일 :				생년월일 :
전화번호 :				전화번호 :

(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) 귀하

※「주거급여법」 제24조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주거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알려드립니다.